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97

발의연월일: 2025. 3. 6.

발 의 자:최보윤·서천호·백종헌

정성국 · 김선교 · 진종오

박수영 • 안상훈 • 박정하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 및 모금을 통한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용한 다른 법률의 조문이 개정되거나, 규제 개혁 필요성 등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 격사유 상 동 법률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1조제1호).
- 나.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함(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 다.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한도를 폐

지함(안 제20조의2).

- 라. 모금회의 공동모금재원 배분 시 해당 재원이 공동모금재원임을 표시하는 것을 정관 규정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0조의3).
- 마.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의"로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를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을 "개발도상국가를"로 한다.

제20조의3 중 "표시하여야 한다"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압류금지)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u>3항 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당하는 사람	제1호의9까지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모금회는 효율적인 모금을	<u><삭 제></u>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	
금을 할 수 있다.	
⑤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	<u><삭 제></u>
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	
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 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 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 업

2. (생략)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 기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u><신</u> 설>

제21조(배분신청) ① (생 략)

② 제20조의2에 따른 국제보건 의료지원사업을 하는 자는 제1

에 대한 배분)
<u>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u>
<u> 정하는 바에 따라</u>
1. 개발도상국가를
2.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20조의4(압류금지) 공동모금재
원의 배분대상자에게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
<u></u> 할 수 없다.
제21조(배분신청) ① (현행과 같
흥)
<u><</u> 삭 제>

항에 따른 배분신청서를 제출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